#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686

발의연월일: 2020. 11. 24.

발 의 자: 강기윤・김희국・최형두

박성중ㆍ이달곤ㆍ구자근

서병수 · 권명호 · 윤영석

이명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금융채무상환 및 채무인수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업개편이나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 이 있음.

이에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불안한 위치에 놓여있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략적인 사업 재편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개선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존의 과세이연 방식에서 비과세로 변경하여 세제지원의 수준을 상향함(제34조, 제39조, 제40조 등).
- 나.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기업별 상황 및 전략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1조의26부터 제121조의32까지).
- 다.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얻는 이익을 증여의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9조, 제40조, 제121조의27 및 제121조의28).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39조제2항 본문 중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 입하여야 한다"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입한다"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를 "채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을 "자산을"로,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을 "해당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을 "자산을"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를 "양도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일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일부를"로,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 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를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수 있다"를 "거주자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내국법인은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을 "합병"으로,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21조의32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을 "합병"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사업재편계획부터 적용한다.
- 제3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 및 제121조의2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및 제121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제121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
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	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
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	세특례) ①
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	
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	
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	
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	
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 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 라 한다)에 대해서는 <u>해당 사</u> 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 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 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 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 ② ~ ④ (생 략)

제3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저 과세특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 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법인 (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 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 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 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각 사업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_
() () (원 레 기 기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3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기게트레) ① (워웨기 기0)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과제득데) ① (연행과 같음) ②
②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
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③ ④ (생 략)
-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해당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⑦ (생략)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 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 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 다)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lt;단서 삭제&gt;</u>
⑥·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 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 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② ~ ⑤ (생 략)
-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 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 을 증여한 주주등의 특수관계 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⑦ ⑧ (생 략)
-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 한 과세특례) ① 2021년 12월 | 한 과세특례) ①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

가 가십서도시	را د (د
<u>각 사업연도의</u>	역금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2.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6	 	
	 <단서 삭	제>

(7) · (8) (현행과 같음)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 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 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 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 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 4. (생 략)

- 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 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 받은 법인이 <u>채무면제익 전액</u> 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 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u>한 표어가 작무한다</u> .
1. ~ 4. (현행과 같음)
②
<u>산</u> 입하지 아니한다.
③
채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 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 한다.

#### ④·⑤ (생 략)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 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 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 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 (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 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 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
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
한 과세특례) ①
<u>자산을</u>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 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 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 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u>해</u> 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 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 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변제에 지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 국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

<u>각</u>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
<u>니한다</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당 내국법인-----

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 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 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내국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대 상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 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 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 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 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한다.
- ③ ④ (생 략)
- ⑤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u>.</u>
2
각 사업연도의 익
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5) -----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u>다만, 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등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⑥·⑦ (생 략)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 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 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1년 12 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 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 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 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으로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u>&lt;</u> प्	<u> </u> 산세>
⑥·⑦ (현행과 같 <sub>年</sub>	<u>2</u> )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
에 관한 법인세 등	두 과세특례)
①	
	<u>자산을</u> -
	익금에 산입
<u>하지 아니한다</u> .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	-------	-----

- 1. (생략)
- 2. 사업재편계획에는 금전의 경 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 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1년 12 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 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채 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 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 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을 것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

1. 2.	(현행과 같음)
	<u>대통령령으로</u>
	대통령령으로
② ③	(현행과 같음) 

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 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1년 12 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 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 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 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 2. (생략)

- ④ (생략)
-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 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 을 증여한 주주등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 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⑦ (생략)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u>양도하고</u>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④ (현행과 같음) ⑤
④ (현행과 같음) ⑤

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 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 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 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 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 무면제익"이라 한다)은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 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 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 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 입한다.

## ② ~ ⑤ (생 략)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 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 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

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u>일부를</u> -
<u>각</u>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b>O</b> (	11 0		1 /	
제1212	조의30(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	에 대	한 과	세특려	1) 1	

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 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 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 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 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 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 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 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 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 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 분(상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 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u>대동령령으로</u> -
거주자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
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내국법인은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

1. • 2. (생략)

② ~ ⑥ (생 략)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 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 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 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 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 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 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 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 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 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

<u>니한다</u> .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	자
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히	
①	
<u>합병</u>	
아니한I	<u> </u>
<후단 삭제>	

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 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 다.

② ~ ④ (생 략)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 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를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 0분의 70"으로 본다.

	2	$\sim$	4	(현	행과	같음	)	
저	121	조.	의32	2(사	업재:	편계획	]에	따
	른	합	-병	시	주스	교부	비율	특
	례)	-						
							<u>ŏ</u>	합병